

자산관리회사 설립인가 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
신청인	상호
	본점의 소재지
	자기자본에 관한 사항
	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
	경영 여부 및 경영 업무에 관한 사항
	자산운용전문인력 및 준법감시인에 관한 사항

「부동산투자회사법」 제22조의3,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「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지침」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신청인

년 월 일
(서명 또는 인)

국토교통부장관 귀하

구비서류

- 정관
 - 발기인의사록
 - 발기인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(발기인이 법인인 경우 그 연혁, 재무제표 및 대표자의 이력서), 법 제7조의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
 - 법인등기부등본(법 제22조의3제3항제2호의 경우에 한한다)
 -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
 -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면(주식회사의 경우에 한한다)
 - 본점·지점의 명칭 및 위치를 기재한 서류
 - 업무개시 후 3년 동안의 사업계획서 및 예상수지계산서
 - 내부통제기준
 - 대표자와 임원, 자산운용전문인력 및 준법감시인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
 - 대표자, 임원, 준법감시인의 법 제7조와 영 제46조제1항(준법감시인에 한함)의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
 - 최근 사업연도 말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(법 제22조의3제3항제2호의 경우에 한한다)
- ※ 법 제22조의3제3항제2호에 따라 인가신청을 하는 경우 2, 3의 서류를 제외한다.
다만, 이 경우 지침 제21조제6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와 다음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- 인력 및 물적 설비의 구분 운영계획
 - 고유재산의 투자·운용 현황